

法 計 統
令 行 施 法 計 統
程 規 會 員 委 計 統

통계청 도서실



B0026678

院 劃 企 濟 經

目 次

統 計 法 1

統 計 法 施 行 令 7

統 計 委 員 会 規 程 11

法律 第 980 号

1962年1月15日公布

改正法律第125号

1962年 12月 12日 公布 統 計 法

第一條 (目的) 本法은 統計調査에 關한 事項을 綜合的으로 調整하고 統計의 體系를 整備함으로써 統計의 眞實性和 統計制度의 效率性의 確立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二條 (定義) ① 本法에서 指定統計라함은 政府나 地方自治團體가 作成하는 統計 또는 其他의 機關에 委任하여 作成하는 統計로서 經濟企劃院長이 指定하여 告示한 統計를 말한다.

② 本法에서 一般統計라함은 指定統計를 除外한 其他 統計를 말한다.
 이외에 國令으로 定하는 統計를 말한다.

第三條 (指定統計調査) ① 指定統計를 作成하기 爲한 調査(以下 指定統計調査라한다)는 本法의 規定에 依하여 實施하여야 한다.

② 指定統計調査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經濟企劃院令으로 한다.
 本法에 規定된 文에 是는 國令으로 定하는 文에 依한다.

第四條 (一般統計調査) ① 一般統計調査를 實施하고자 할 때에는 調査實施機關은 그 調査에 關하여 第六條 第一項 第一號의 事項을 미리 經濟企劃院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經濟企劃院長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前項이 規定된 條에 依하여 地方自治團體 또는 其他機關(次項에 限한다)이 申題事項에 申告한 事項의 變更 또는 中止를 要求하거나 命할 수 있다.
 規定에 依하여 經濟企劃院長이 申題한 事項에 對하여 調査의 種類 또는 中止를 要求하거나 命할 수 있다.

第五條 (申告義務) ① 政府 또는 地方自治團體 其他 機關의 長은 指定統計調査를 爲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個人, 法人, 其他의 團體에 對하여 統計資料의 申告를 命할 수 있다.

②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申告의 命을 받은者가 未成年者나 禁治産者인 境遇 또는 法人 其他의 團體인 境遇에는 그 法定代理

人 理事 其他 法令의 規定에 依하여 法人 其他의 團體를 代表하는 者가 本人을 代理하거나 代表하여 申告하여야 한다.

第六條 (指定統計調査의 承認과 實施) ① 指定統計調査를 實施하고자 할 때에는 調査實施機關은 그 調査에 關하여 다음 各號의 事項에 對하여 미리 經濟企劃院長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但, 第十二條 但書의 規定에 該當할 때에는 第三號의 事項을 除外한다.

一 調査目的 事項 範圍 期日 및 方法

二 集計事項과 集計方法

三 調査結果의 公表方法和 期日

四 調査關係書類의 保存機關과 保存責任者

五 調査經費의 概算額

항목

六 其他 經濟企劃院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② 前項의 規定에 依한 承認을 받은後 調査를 中止하거나 承認받은 事項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다시 經濟企劃院長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③ 經濟企劃院長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關係行政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 其他機關의 長에 對하여 指定統計調査의 實施變更 또는 中止를 要求하거나 命할 수 있다.

第七條 (事務改善의 要求) 經濟企劃院長은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關係行政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 其他의 機關이 實施하는 統計調査의 改善을 要求할 수 있다.

第八條 (統計調査員) ① 指定統計調査를 實施하기 爲하여 一線에서 調査하는 統計調査員을 둘 수 있다.

② 本 統計調査員은 本法에 特히 規定한 것 以外는 國家公務員法을 適用한다.

第九條 (實施調查) ① 統計調査公務員은 指定統計調査를 爲하여 必要한 場所에 들어가서 미리 經濟企劃院長의 承認을 받은 事項에 關於하여 檢査 또는 調査資料의 提供을 要求하거나 關係者에 對하여 質問할 수 있다.

② 統計調査公務員이 前項의 規定에 依한 調査를 할때에는 그 權限을 表示하는 証票을 携帶하고 미리 關係者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第十條 (秘密의 保護) 統計調査의 結果 알려진 個人, 法人 其他의 團體의 秘密은 保護되어야 한다.

第十一條 (統計目的以外의 使用禁止) 누구든지 指定統計의 作成을 爲하여 蒐集된 統計資料를 統計上의 目的 以外에 使用하여서는 아니된다.

第十二條 (結果의 公表) 指定統計調査의 結果는 遲滯없이 其原本을 經濟企劃院長에게 提出하여 協議한 後 公表하여야 한다. 但, 經濟企劃院長의 承認을 받았을 때에는 公表하지 어디할 수 있다.

第十三條 (報告의 調整) 政府~~과~~ 地方自治團體 및 其他機關이 民間에 對하여^는 調査하기 爲한 調査票 또는 報告樣式은 미리 經濟企劃院長에게 提出하여 承認을 받아야 한다.
또는 報告樣式은 미리 經濟企劃院長에게 提出하여 承認을 받아야 한다.

第十四條 (統計刊行物의 調整) 指定統計調査의 實施機關이 아닌者가 第十二條의 規定에 依하여 公表된 結果를 複製하여 刊行物로 發行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經濟企劃院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第十五條 (資料等의 提出과 說明의 要求) 經濟企劃院長은 本法의 施行에 關於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各 行政機關 또는 地方團體나 其他의 機關의 長에 對하여 資料와 報告의 提出

또는 說明을 要求할 수 있다.

第十六條 (指定統計調査의 實施에 對한 協力) 指定統計調査의 實施者가 그 統計調査를 實施하기 爲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關係 各行政機關 또는 地方自治團體나 其他의 機關의 長에 對하여 調査報告 其他의 協力を 要求할 수 있다.

第十七條 (指定統計調査에 關한 事務委任) 政府는 閣令의 定한바에 따라 指定統計調査에 關한 事務의 一部를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第十八條 (權限의 委任) 經濟企劃院長은 閣令의 定하는바에 依하여 第二條 및 第六條에 規定한 權限을 統計局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第十九條 (統計委員會) ① 政府의 統計調査에 關한 事務에 關하여 諮問에 應하며 建議하게하기 爲하여 經濟企劃院에 統計委員會를 둔다.

② 統計委員會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閣令으로 定한다.

第二十條 (罰則) 다음 各號의 一에 該當하는 者는 六個月以下의 懲役이나 五萬圓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 一 第五條의 規定에 依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偽의 申告를 한 者
- 二 第五條의 規定에 依한 申告를 妨害한 者
- 三 第九條의 規定에 依한 檢査를 拒否 妨害 또는 忌避하거나 虛偽調査資料를 提供하거나 虛偽의 陳述를 한 者
- 四 指定統計調査에 關한 事務에 從事하는 者 또는 其他의 者로서 統計調査의 結果를 眞實과 相反된 것으로 만드는 行爲를 한 者

第二十一條 (罰則) ① 統計調査 公務員이 그 職務執行에 關하여

知得한 個人, 法人, 其他의 團體의 秘密에 屬하는 事項을 他人에게 漏泄하거나 盜用한 때에는 一年以下의 徵役이나 拾萬圓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② 統計調査公務員 以外의 公務員 또는 公務員이었던 者가 前二項의 行爲를 할때에도 또한 같다.

附 則

- ① (施行日)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 ② (廢止法令) 人口調査法 西紀19³9年11月 勅令第327号 資源調査法을 朝鮮等에 施行하는 件과 西紀19³7年6月21日 軍政法令 第143号 農業統計報告令은 이를 廢止한다.
- ③ (經過規定) 本法 施行後 3個月 以內에 行하는 指定統計調査는 經濟企劃院長이 承認하는것에 關하여 第六條의 規定에 依한 承認을 받지않고 이를 實施할 수 있다.

限

1962 年 3 月 10 日 公布

統 計 法 施 行 令

第一條 (目的) 本令은 統計法(以下法이라한다)의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二條 (指定統計의 告示) 法第二條第一項의 規定에 依한 다음의 事項을 記載하여야 한다.

다음의
음지기는

ㄱ 指定番号

ㄴ 指定統計의 名稱

ㄷ 調査實施機關名

第三條 (一般統計調査의 申告) ① 一般統計의 調査實施機關은 法第四條第一項의 規定에 依하여 申告한 一般統計調査를 變更 또는 中止하고자 할때에는 그事由를 經濟企劃院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法第四條第一項과 前項의 規定에 依한 申告節次에 關하여는 經濟企劃院長이 定한다.

第四條 (統計調査員의 職務) 法第八條의 規定에 依한 統計調査員은 指定統計調査實施機關의 長과 그所屬機關의 長의 指揮監督을 받아 指定統計調査의 調査票配布와 蒐集 其他 指定統計調査에 關한 事務에 從事한다.

第五條 (証票의 作成) 法第九條第二項의 規定에 依한 証票는 指定統計調査實施機關의 長이 別紙書式에 依하여 作成한다.

第六條 (結果의 公表方法) ① 法第十二條의 規定에 依한 指定統計 調査結果의 公表는 官報 其他의 刊行物에 掲載하여 이를 行한다.

②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官報以外의 刊行物로써 公表한 境遇

에는 調査實施機關은 當該刊行物의 名稱과 發行年月日을 經濟企劃院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

第七條 (調査票等의 範圍) 法第十三條에 規定된 調査票 또는 報告樣式은 政府나 地方自治團體및 其他機關이 民間에 對한 一般 統計로서 定期的으로 行하기 爲한 調査票 또는 報告樣式을 말 한다.

第八條 (委任事務의 範圍) 法第十七條의 規定에 依하여 地方自治 團體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는 事務는 指定統計調査에 關한 宣傳, 啓蒙, 調査票의 配付, 送付, 保管 其他 指定統計調査의 實施에 따르는 事務로 한다.

第九條 (細則) 本令에 規定한것 外에 統計調査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經濟企劃院令으로 定한다.

附 則

本令은 公布한날로부터 施行한다.

閣令 第 513 号

1962年3月10日公布

統計委員會規程

第一條 (目的) 本令은 統計法(以下法이라한다) 第十九條의 規定에 依한 統計委員會(以下委員會라한다)의 組織과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二條 (機能) 委員會는 다음의 事項을 審議한다.

- 一 指定統計의 指定
- 二 指定統計調査의 承認, 中止 또는 變更에 關한 事項
- 三 一般統計에 對한 報告의 調整
- 四 一般統計實施에 對한 申告事項의 中止 또는 變更에 關한 事項
- 五 其他 政府統計調査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

第三條 (構成) ① 委員會는 委員長一人과 委員二十人以内로써 構成한다.

② 委員長은 經濟企劃院副院長이되며 委員은 다음各号에 揭記한 者가 된다.

- 一 經濟企劃院長, 財務部長官, 文敎部長官, 農林部長官, 商工部長官, 保健社會部長官과 內閣事務總長이 各其 所屬二級以上의 國家公務員中에서 指名한 者 各一人
- 二 韓國銀行, 韓國產業銀行과 農業協同組合中央會의 長이 各其 所屬部長級以上의 職員中에서 指名한 者 各一人
- 三 統計에 關한 學識과 經驗이 豊富한 者 中에서 經濟企劃院長의 提請에 依하여 內閣首班이 委囑한 者

第四條 (委嘱委員의 任期) 內閣首班이 委嘱한 委員의 任期는 二年으로하되 補闕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第三條 (委員長의 職務와 그代行) ① 委員長은 委員會를 代表하며 委員會의 會務를 統轄한다.

② 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委員長이 指名하는 委員이 그職務를 代行한다.

第六條 (會議) ① 委員長은 委員會의 會議 (以下會議라 한다) 를 召集하여 그議長이 된다.

② 會議의 議事は 委員長을 包含한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委員過半數의 贊成으로써 議決한다.

③ 議長은 表決權을 가지며 可否同數인 때에는 決定權을 가진다

第七條 (意見의 聽取) 委員會는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統計担当公務員이나 統計에 精通한 者를 會議에 出席하게하여 그意見を 聽取할 수 있다.

第八條 (會議錄) 委員會는 會議을 開催하였을 때에는 會議錄을 作成하여야 한다.

第九條 (專門委員) ① 委員會에 統計에 關한 專門事項을 調査하게하기 爲하여 專門委員十五人以內를 둘수 있다.

② 專門委員은 統計에 關하여 學識과 經驗이 豊富한者 中에서 經濟企劃院長이 委嘱한다.

~~③ 專門委員은 統計에 關한 事項에 對하여 會議에 出席하여 意見を 陳述할 수 있다.~~

第十條 (幹事長等) ① 委員會에 幹事長一人과 幹事若干人을 둔다.

② 幹事長은 經濟企劃院 統計局 統計基準課長이 되며 委員會의 庶務를 處理한다.

③ 幹事는 幹事長의 推薦에 依하여 經濟企劃院長이 委囑하며 委員會의 庶務에 從事한다.

第十一條 (手当等) ① 會議에 出席한 公務員이 아닌 委員에 對하여는 豫算의 範圍內에서 日當과 車馬費를 支給할 수 있다.

② 專門委員과 幹事の 報酬에 對하여는 經濟企劃院長의 定하는 바에 依한다.

第十二條 (運營細則) 本令에 規定한 것 外에 委員會의 運營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會議의 議決을 거쳐 委員長이 定한다.

附 則

① (施行日) 本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 (廢止法令) 大統領令 才千四百四十九号 國勢調査委員會 規程은 이를 廢止한다.